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0
----------	-----

제출일자 : 2000. 2.

제출자 : 제천시장

제안사유

- 1999년 8월 19일 개정된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 규정의 신설 및 조문을 수정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준칙시달(환경부훈령 제43호 : '99. 7.26)

주요골자

- 제4조의2(신설) :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신청시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해야하고,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제13조4항 : 하수배출량조사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동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 신설함.
- 제16조제2항4호 : 하수배제용 배수설비설치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문수정.

- 오수분류시설 및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및 반분정화조
-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설치비용의 전액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 ⇒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로 조문수정.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 오수분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개정조례안 : 덧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관계법규발췌 : 덧붙임

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합류정화조”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하며, “면재한 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조례제4의2의 개정규정에의한 준공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배제				
	설치위치	제천시 읍,면,동		번지(통 반)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VGI,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환경부 고시 제97-85(97.9.1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 고	
		검사일자		검사일자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기준 준수 여부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신설>	<p>제4조의2(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배수설비의 준공 검사 절차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p>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단서신설></p>	<p>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p>
<p>제16조(원인자부담금)</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p> <p>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이 10분의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p>	<p>제16조(원인자부담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p> <p>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이 10분의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치 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p> <p>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p>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p>	<p>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치 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p> <p>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함.</p> <p>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p>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p> <p>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식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부지 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식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부지 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정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p> <p>3 (생략)</p> <p>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u>오수정화시설 및 전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설치비용의 전액을 원인가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u></p> <p>다만, <u>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u></p>	<p>3 (현행과 같음)</p> <p>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u>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원인가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u></p> <p>다만, <u>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u></p>	<p>"오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p> <p>조문정리</p>

관련법규 발췌문

하수도법

○ 제24조(배수설비의설치등)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기타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제2조(정의)

- 오수처리시설이라함은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 단독정화조라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 제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

수질환경보전법

○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주 500-705 청주시 문화동 69번지 / 전화 252-2694 (형광 3532, 3538) / FAX 220-3539
 처리부서 : 물관리과(신관5층) / 과장 연해용 / 하수관리담당사무관 방홍석 / 담당자 신연식

문서번호 : 물관 67712 - 1117

시행일자 '99. 7. 30.

(경 유)

발 음 : 더 01~12

참 조 :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선결	소장	116	지시	
접	일자	'99. 07. 30.	결재·공람	추진각본인용
수	번호	15기		소장 방홍석
처리과				담당 신연식
담당자		신연식		

이. 검토회 소제 개정에 참고하십시오

제 목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알림

1. '99. 8. 9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불임과 같이 환경부로부터 개정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환경부 감사실에서 대구광역시 및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한 감사지적내용 및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1부(5매)
 2. 원인자부담금 관련 감사지적내용 및 개선사항 1부(2매) 끝.

충청북도지

전결 물관리과장 연해용



환경부 훈령 제434호('99. 7. 26.)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량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 제2항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시·군·구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부 칙

이 기준은 1999. 8. 9부터 시행한다.

